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5 선고 2019가단229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87,273,275원 및 그 중 94,716,106원에 대하여 2018. 12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수영

별지